

『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요건이 하향됨에 따라 위임조례인 「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상 감사청구가 가능한 연령과 주민수를 개정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주민감사청구 주민 연령 변경 (안 제2조)
 - 당초 : 20세 이상 → [변경 : 18세 이상]
-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 변경 (안 제2조)
 - 당초 : 190명 이상 → [변경 : 150명 이상]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<주민의 감사 청구>에 필요한 주민 수와 주민 연령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에 근거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는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